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이 콘텐츠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소득, 주거, 교육, 취업 등 필수적인 지원 제도와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
1. 자립지원 알아보기 4
1.1. 자립지원 대상 4
1.1.1. 자립준비청년이란? 4
1.2. 자립지원 사업 6
1.2.1. 자립지원 기관 및 지원사업 6
2. 소득 및 주거 지원 9
2.1. 소득 9
2.1.1.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9
2.1.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11
2.2. 주거 13
2.2.1. 자립지원시설 및 청년임대주택 13
3. 교육 및 취업 지원 17
3.1. 대학 진학 17
3.1.1. 대학 입학 및 학자금 17
3.2. 진로 및 취업 19
3.2.1. 고용기회 확대 19
4. 그 밖의 지원 22
4.1. 의료 및 심리상담 22
4.1.1. 의료 지원 22
4.1.2. 심리상담 지원 24
4.2. 법률 26
4.2.1.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26
4.2.2. 법률 상담 및 교육 29
4.3. 위기아동 · 청년 31
4.3.1. 고립 · 은둔 아동 · 청년 및 가족돌봄 아동 · 청년 31

1. 자립지원 알아보기

1.1. 자립지원 대상

1.1.1.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이란?

▪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보호대상아동은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양육(위탁가정)되거나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에 입소하고 생활하며 보호조치를 받습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참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참조).

보호기간의 연장

▪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재보호조치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이란?

▪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참조).

자립지원 활동 및 대상

자립지원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자립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지원 대상

▪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위의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립지원 주요 단계

자립지원 단계별 서비스 내용

▪ 1 ~ 6단계: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7단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시설입소(위탁) 결정 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서 작성(진학, 취업, 주거 계획 등 포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자립지원계획 입력
3단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4단계	자립준비도 점검	•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연장 보호 검토
5단계	보호연장 자립지원	• 취업·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고용센터, 국가장학금, 외부 자원 등 활용 • 집중지원 필요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연계
6단계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 보호종료예정자 자립 준비상황 최종 점검 및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7단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 집중지원 필요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0쪽>

1.2. 자립지원 사업

1.2.1. 자립지원 기관 및 지원사업

자립지원 기관별 역할

자립지원 사업 전달체계

▪ 자립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는 크게 관리체계와 운영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및 사업 평가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별 자립계획수립 여부, 자립준비 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 점검
	자립지원 전담기관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15세 이상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 계획수립,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립수당 신청 지원 ·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참석 · 보호종료 후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협조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집중

<추진체계별 역할 및 기능>

<출처: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1쪽>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39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6~17쪽).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CDA)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8쪽).

- 자립준비청년 기본 사후 관리
-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제공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연락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 제공

바람개비서포터스

▪ 바람개비서포터스는 먼저 자립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이 후배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자립 멘토 모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멘토링·교육·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0쪽).

▪ 바람개비서포터스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0쪽).

- 자립교육·자립멘토링: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경험, 노하우, 정보 등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 제공
- 역량강화교육·전문가멘토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링 진행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지, 정책제안 등을 위한 자발적 교류활동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

▪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은 자립지원 정책, 공공·민간 자립 지원 사업, 교육 영상, 멘토 상담게시판 등 다양한 자립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3쪽).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원이 직접 대상자와 따뜻하게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4쪽).

-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 이용대상: 자립정보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 상담분야: 소득, 주거, 심리, 진학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자립 정보 안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민 상담 지원, 그 밖에 자립생활 노하우 제공

> ※ 바람개비서포터스 및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주거 지원

2.1. 소득

2.1.1.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립수당"이란?

▪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미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지원 대상

▪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사람(단, 2018. 8.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단, 2024. 2. 9.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다만, 자립수당 지원 중인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수당이 중지 처리(재보호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되며,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복귀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신청 방법

▪ 자립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29쪽).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 우편 및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Q.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A.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 주소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소지 변경일	자립수당 지급 시·군·구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규 신청 후 결정 전 주소지 변경된 경우
15일 이전	변경 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16일 이후	변경 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소통과 참여-자주하는 질문 >

※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이란?

▪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 다만, 자립정착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참조).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31쪽).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사람이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이 가능

재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재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이 가능(단, 중복 재지급이 불가하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Q. 2년 전 보호 종료되어 자립정착금을 수령했는데, 현재 오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자립정착금의 경우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 수령이 가능하므로 증액분에 대한 추가 수령은 어렵습니다. 또한 중복수령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보호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 종료 해당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알림/소식-FAQ >

신청 방법

- 자립정착금의 신청 방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문의 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1쪽).
-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후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입금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1쪽).

※ 자립정착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디딤씨앗통장(CDA)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제2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지원 대상

- 디딤씨앗통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지원 기간

▪ 지원 대상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정부의 매칭 지원은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 계좌는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지원 내용

▪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10만원 내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만기지급 및 조기인출

▪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3쪽).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O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인출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O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

※ **디딤씨앗통장(CD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1670-1834) 또는 개별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 금융상품

"청년우대 금융상품"이란?

▪ 청년우대 금융상품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으로 하여금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15~39세) 또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청년미래적금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19세~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청년내일저축계좌, ☎1522-369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미래적금, ☎13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주거

2.2.1. 자립지원시설 및 청년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이란?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

입소 대상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입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 (우선)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중인 아동
-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자립준비청년으로 29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재보호조치 대상자

보호 기간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29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신청 방법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청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입소 희망 자립생활관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 희망 자립생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2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중도퇴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입소 대상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19세~24세 이하 청소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보호 기간

▪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에는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신청 방법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입소 중인 시설, 입소했었던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전화(☎13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이란?

▪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9쪽).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운영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입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0쪽).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0쪽).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재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 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2쪽).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은 20세 초과 이후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주택 유형으로 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3쪽).

※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전용 상담센터(☎1670-22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및 취업 지원

3.1. 대학 진학

3.1.1. 대학 입학 및 학자금

대학 입학

대학 진학정보 찾기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나의 학업 성적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로 가기 위한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84쪽).

> ※ **진로진학센터 누리집**
>
> •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 • 대입정보포털: https://www.adiga.kr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8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제4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학자금 마련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

▪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경제 수준에 따라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 다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기준(백분위점수)을 미적용하며,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 **Q. 지금 살고있는 지역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
> A. 대학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 다만, 대학등록금 명목이 아닌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축하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지급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87쪽 참조 >

국가근로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이며,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Q. 해외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기간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

A.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 다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에 제한이 없으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Q.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등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기등록(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함) 처리해 줄 경우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과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 대출 최소 금액 미달로 등록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진로 및 취업

3.2.1. 고용기회 확대

진로 및 적성 탐색

진로 선택

▪ 만약 아직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찾기

▪ 원하는 진로를 결정했다면 채용 정보 사이트를 꾸준히 확인하고, 다양한 채용 플랫폼과 기업 정보를 검색하며 나에게 맞는 공고를 찾습니다.

※ 진로 및 취업 관련 주요 홈페이지

•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채용 시에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점의 비중이나 부여 여부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5. 1. 16.),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참조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인의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경력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대일(1:1)로 제공하는 심층 상담 프로그램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고용정책 참조).

▪ 취업을 위해 경력개발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진로, 직업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고용정책 참조).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및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2쪽).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및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집중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 지원

▪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Ⅰ유형 및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2쪽).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지원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8쪽).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유형을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8쪽).

-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중 전문가 코칭을 기반으로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일경험 8주 내외)
-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서 직무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일경험 4~20주 내외)
- ESG지원형 일경험: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경험(직무훈련, 인턴,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직무교육, 일경험 기간, 내용 등 자유롭게 구성)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1811-844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합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5쪽 참조).

▪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훈련참여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05쪽).

- 훈련실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을 실시
- 내부평가(1차평가):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학습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평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취득

> ※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s://www.hrdkorea.or.kr, ☎1644-8000)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지원

4.1. 의료 및 심리상담

4.1.1.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을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2쪽).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2쪽).

▹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하며,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 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할까요?**
>
> A.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그렇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 <출처: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알림/소식-FAQ 참조>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19쪽).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19쪽).

▪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50~80% 차등 적용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19쪽).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19쪽).

▹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19쪽).

국가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참조).

▪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건강검진 참조).

구분	검진항목	비고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항목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4년마다)
	우울증	20~34세(2년마다)
	조기정신증	

※ 재난적의료비 지원 및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한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함)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다음의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

-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및 산전·산후 보호: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 지원
- 출산 후 아동 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 보호출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심리상담 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원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5호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정보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에서는 소득, 주거, 생활, 심리정서, 멘토링, 금융, 진학, 취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와 공공 민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이용방법**
>
>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
>
> • 전화상담: ☎1855-2455
>
> • 온라인상담: [아동자립지원] 카카오채널 1:1 채팅 상담(http://pf.kakao.com/_Bljuxb/chat)
>
> • 문의처: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및 보건복지부—정책 참조).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정책 참조).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0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6쪽).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 제공(바우처)

구분	1급 유형	2급유형
서비스단가	1회당 8만원	1회당 7만원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결정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정책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6쪽).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4쪽).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의 보조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4쪽).

▪ 신청 방법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4쪽).

> ※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정신건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법률

4.2.1.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상담소의 설치·운영

▪ 성폭력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참조).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참조).

▪ 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관련 상담
- 성폭력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다음과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
-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41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이 필요할 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8쪽).

▪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8쪽).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법의학적 증거물(증거 채취 응급키트)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속 진료, 의료상담	영상 증인신문,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심리지원	**동행지원**	**수사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이동지원	진술녹화 제도, 여성 경찰관의 수사 상담, 국선변호사제도 등

※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바라기센터(https://www.sunflowercenter.or.kr)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 보호시설에서는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긴급 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30쪽 참조).

상담 지원	삭제 지원
관련 문의 및 지원 내용 안내	유통 플랫폼별 피해자 자료 삭제 요청, 삭제 지원·모니터링 리포터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수사 지원 연계	**그 밖의 지원 연계**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추가 증거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 , ☎02-735-89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성매매 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법률 상담 및 교육

법률 상담 및 소송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지원

▪ 생활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멘토상담 게시판에 등록된 법률 지원 전문 멘토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 면접상담: 예약 후 방문
- 전화 및 채팅상담: ☎132
-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45쪽).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참조).

<table>
<tr><th>대상자</th><th>유·무료여부</th><th>대상사건</th><th>구비서류</th></tr>
<tr><td>보호대상아동</td><td rowspan="4">전부무료</td><td rowspan="3">모든 사건</td><td>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td></tr>
<tr><td>청년미취업자</td><td>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td></tr>
<tr><td>대학생</td><td>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td></tr>
<tr><td>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24세 이하)</td><td>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td><td>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td></tr>
<tr><td colspan="4">※ 공통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td></tr>
</table>

※ 그 밖의 지원대상자 및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교육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세발자전거)

▪ “세발자전거”는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예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복지제도 및 생활법률 지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입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 강의 주제는 주거, 경제, 직장/대학, 범죄예방, 진로상담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 ※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세발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법교육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물론, 경제 및 법률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 강의 주제는 자립 지원, 경제, 법률, 주거, 진학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수강 신청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위기아동 · 청년

4.3.1. 고립 · 은둔 아동 · 청년 및 가족돌봄 아동 · 청년

위기아동·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또는 그 밖에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조제1항 참조).

고립·은둔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 “고립·은둔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결과 고립 위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 청년미래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은둔청년 특화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간단한 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 현재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지원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

  ·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고립상태 해소를 위한 대인관계역량 강화, 활동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

·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 생활습관 형성

·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교육(별도 모집 예정)

< 출처: 청년몽땅정보통—금융복지 참조>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 가족돌봄청(소)년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청년ON(www.mohw2030.co.kr), 공지사항 참조].

▹ 아픈 가족: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중대수술로 인한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장애인 등급자, 정신질환병력 중 1개 이상에 해당)

▹ 동거: 아픈 가족과 동일 주소지 거주(재가돌봄). 단, 아픈 가족이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비동거 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 청년의 돌봄전담: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단, 다른 장년가구원이 있지만 사실상 청년 독박돌봄인 경우 등 예외 있음

▪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 아픈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

▹ 자기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

▹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종합 연계

※ 현재 **가족돌봄청년지원 사업**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세 ~ 3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청년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ON(www.mohw2030.co.kr) 또는 지역 청년미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